

울산지방법원 2021. 2. 18 선고 2019나164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1. 2. 18 선고 2019나16482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19. 11. 21 선고 2017가단67140 판결

전 문

원고,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필

피고,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

변론 종결 2021. 1. 14

판결 선고 2021. 2. 18

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7가단67140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와 C 사이에 2017. 4. 7.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영업장(이하 "이 사건 영업장"이라 한다)에 대한 사업포괄 양수도계약(이하 "이 사건 계약"이라 한다) 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비치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(신고) 관리대장 상 영업자 명의에 관하여 C에게 대표자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제1심 판결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 3쪽 아래에서 2줄의 r 갑 4, 5호증, 을 1내지 4호증(가지번호 포함) 의 각 기재, 을 「갑 4내지 6호증, 을 1내지 4호증(가지번호 포함) 의 각 기재, 당심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」로 고친다.

○ 제5쪽 12줄부터 1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r마. D와 C는 2019. 10. 11. 울산지방법원 2019노843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유죄판 결을 선고받았고,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그러나 위 사건에서 D와 C가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유는 이들이 허위로 이 사건 영업장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로 변경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장래의 매출 채권 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수있게 됨으로써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계약 및 명의 변경무렵에 이 사건 영업장에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었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.

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계약 당시 이 사건 영업장에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재산 이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않는 이상 D와 C가 이 사건계약과 관련하여 강제 집행면 탈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

사정만으로는 이 사건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.

바. 모은 이 사건계약이후에도 2020년까지 매해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다.

그러나이 사건계약 후에 이 사건 영업장에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 장의 유체동산은 이 사건계약전 이미 경매로 매각된 상태였고 이 사건 영업장의 상 호인 'F' 은 제3자 명의로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는 점, 그밖에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 건 영업장과 관련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않는 이상 이 사건 계약 이후 'F' 에 상당한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 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 」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신형철판사 안복열판사 김현진

별지